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3급 이상 행정기구 수를 확대하고, 출자·출연기관 감·조사 기능 확대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며,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설 등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정원을 18,472명에서 18,536명으로 64명 증원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‘서울민주주의위원회’ 등 3급 이상 행정기구 신설, 출자·출연기관 감·조사 전담기구인 ‘공공감사 담당관’ 신설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(+60명)
- 나.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인력 증원(+4명)
- 다. 행정기구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(58명)
 - 1) 본청 4급 △3명, 5급 이하 △54명
→ 합의제 4급 +3명, 5급 이하 +54명
 - 2) 본청 연구관 △1 → 사업소 연구관 +1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
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 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5. 2. ~ 5. 7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8,472명”을 “18,53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0,437명”을 “10,415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328명”을 “33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160명”을 “242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총계	18,536	
----	--------	--

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일반직 계	10,539	
-------	--------	--

같은 표 2·3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·3급	24	18		1	3	2
------	----	----	--	---	---	---

같은 표 3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급	20	10		1	9	
----	----	----	--	---	---	--

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급	246	145	17	8	67	9
----	-----	-----	----	---	----	---

같은 표 5급 이하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5급 이하 소계	10,123					
----------	--------	--	--	--	--	--

같은 표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구관	32	4		34	24	
-----	----	---	--	----	----	--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,47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 10,437명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328명</p> <p>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: 160명</p> <p>【별표 3】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18,536명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/p> <p>10,415명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332명</p> <p>5. -----242명</p> <p>【별표 3】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 회 사무처</th> <th>직 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회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18,47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10,47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3</td> <td>1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8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42</td> <td>147</td> <td>16</td> <td>8</td> <td>67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이하 소계</td> <td>10,06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0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회 행정기관	총 계	18,472						정무직 계	2						일반직 계	10,475						1급	7	6	1				2·3급	23	18		1	3	1	3급	18	8		1	9		3·4급	5	5					4급	242	147	16	8	67	4	4·5급	10	10					5급이하 소계	10,066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04		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 회 사무처</th> <th>직 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회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18,53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10,53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4</td> <td>1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2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46</td> <td>145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67</td> <td>9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이하 소계</td> <td>10,12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0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회 행정기관	총 계	18,536						정무직 계	2						일반직 계	10,539						1급	7	6	1				2·3급	24	18		1	3	2	3급	20	10		1	9		3·4급	5	5					4급	246	145	17	8	67	9	4·5급	10	10					5급이하 소계	10,123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04					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회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8,47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0,47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3	18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8	8		1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42	147	16	8	67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10,06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0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 속 기관	사업소	합의회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8,53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0,53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4	18		1	3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20	10		1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46	145	17	8	67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10,12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0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별정직 계	37						별정직 계	37					
4급상당	5	3	2				4급상당	5	3	2			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
연구직 계	387						연구직 계	387					
연구관	62	5		34	23		연구관	62	4		34	24	
연구사	325						연구사	325					
지도직 계	24						지도직 계	24					
소방공무원 계	7,027						소방공무원 계	7,027					
소방준감	5	4		1			소방준감	5	4		1		
소방정	29	2		27			소방정	29	2		27		
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
소방령 이하 계	6,992						소방령 이하 계	6,992					
교육공무원 계	520						교육공무원 계	520					
총 장	1						총 장	1					
교수 등	450						교수 등	450					
조 교	69						조 교	69					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 용 추 계 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을 18,472명에서 18,536명으로 총 64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
(일반직 +64명)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19년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세입						
	소계(a)	2,487,316	5,504,539	5,603,620	5,704,486	5,807,166	25,107,127
구분	세출						
	인건비						
	소계(b)						
□ 총 비용(a-b)		2,487,316	5,504,539	5,603,620	5,704,486	5,807,166	25,107,127

※ 매년 인건비 상승률 1.8%('19년 기준) 적용 추계

※ 1차년도는 정원 배정시기 고려('19.7.15.)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국비						
	지방세수입	2,487,316	5,504,539	5,603,620	5,704,486	5,807,166	25,107,127
구분	시비						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	민간						
	기타						
합계		2,487,316	5,504,539	5,603,620	5,704,486	5,807,166	25,107,127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☎ 2133-6724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정원 변동내역 : +64명

○ 일반직 : +64명

- 2·3급 +1, 3급 +2, 4급 +4, 5급 +6, 6급 +25, 7급 +23, 8급 +3

2. 비용소요 추계 : 5,407,209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세 부 내 역	비 고
합 계	+5,407,209	◆ 총 계 : +5,407,209 ○ 일반직(+64명) : +5,407,209 ▷ 2급(+1) : 139,445 × 1명 = 139,445 ▷ 3급(+2) : 128,326 × 2명 = 256,652 ▷ 4급(+4) : 111,458 × 4명 = 445,832 ▷ 5급(+6) : 103,029 × 6명 = 618,174 ▷ 6급(+25) : 84,897 × 25명 = 2,122,425 ▷ 7급(+23) : 72,270 × 23명 = 1,662,210 ▷ 8급(+3) : 54,157 × 3명 = 162,471	'19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

※ 2.3급 정원은 2급으로 운영 예정이므로, 2급으로 비용추계함